

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·과장 광고, 이제 그만!

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(☎ 044-201-3412)

▶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·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

-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.
- 또한,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경우 성명, 명칭, 전화번호,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 >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·과장 광고, 이제 그만

<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금지>

- ▶ 추진배경 :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허위(미끼)·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
- ▶ 주요내용
 - ①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, 중개보조원 등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
(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 - ② 중개업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(성명, 명칭, 전화번호, 소재지)사항 의무화
(위반시 과태료 50만원)
- ▶ 시행일 : 2013.12.5.